

한국콘텐츠진흥원·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중소게임개발사 동반성장을 위한 서버 및 기술지원

업무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'KOCCA'라 한다)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(이하 'NBP'라 한다)는 게임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개발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'KOCCA'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개발사들에게 'NBP'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게임의 역량강화 및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.

1. 'NBP'는 'KOCCA'에서 지정한 게임개발사에게 아래 내용을 지원한다.
 - 매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정기 교육 초청
 - 분기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정기 세미나 개최
 - 업체 요청 시 방문 기술지원(핸즈온) 지원
 - 서버 비용 지원 : 매월 업체당 42만원 상당의 크레딧 제공
 - 상세 지원내역은 별첨한 표를 따른다.
2. 'KOCCA'는 'NBP'에 아래 내용을 제공한다.
 - 신규 구축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'NBP'를 협력업체로 소개.
 - 지원업체 간담회 진행 시, 'NBP'의 지원내역 소개 시간 제공.
3. 본 협약을 통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.
 -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 (약 50개 업체)
 -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사업 대상 (24개 업체)

- 차세대게임 제작지원 사업 대상 (약 26개 업체)
4. 기타 협력 및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이 별도로 합의한다.

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 기간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 해지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3조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16일

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

대표 박원기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김영준

